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8호로 2021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6)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및 제20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 6. 10.)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9호로 2021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 '18. 1. 1.)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기준 완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1. 9. 2. ~ 9. 22.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 '18. 1. 1.)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소유·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 확대를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 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